

스승존경 제자사랑 학교문화 실현을 위한

교권침해예방 학생·학부모 특별교육 연수 자료

2013. 6.



경기도교육청

목 차

제1부 교권과 교권보호	1
I. 교권의 개념	2
II. 교권침해의 개념	2
III. 교권침해 유형	2
IV. 현행 교권 관련 법률.....	3
V. 교권보호 기구 및 제도	5
제2부 2013 교권보호 기본계획(중점내용)	8
I. 실태분석	8
II. 추진체제	9
III. 추진 내용	10
1. 교권침해 현황 실태 조사	10
2. 교권보호지원센터 상담 실적	11
3.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11
4. 교권보호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	12
5.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운영	13
6. 교권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연수 및 홍보 강화	14
7. 학교차원의 교권 침해 예방 및 대책 강화	15
8. 교권침해 학생·학부모 특별교육 운영	15
※ 교권침해 사례별 대처방안	17
<부록>	25
1. 교권침해 사안보고 양식	
2. 교권침해 학생 선도 처분 요구서	
3. 교권보호위원회 관련 법령(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4.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예시안)	
5.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안내	
6. 경기교권보호현장	

제1부 교권과 교권보호

I 교권의 개념

교권은 협의로는 교사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교육권을 의미하며, 광의로는 여기에 교사의 권위와 생활 보장권 및 자율적인 단체 활동권 등을 포함한다.

1. 교사의 교육할 권리(교육권)

학생을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교사는 교육할 권리를 갖는다. 이는 통상 교사의 교육권(또는 수업권)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교육과정 편성권, 교과서 작성권, 교재 채택 및 선정권, 교육내용 결정권, 교육방법 결정권, 평가권, 학생 지도 및 징계권 등을 포함한다.

2. 전문직 종사자로서 교사의 권리

교사는 전문직 종사자로서 법률을 통하여 일정한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가. 신분 보장

「교육기본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고 선언하고 있는 바, 교원은 「국가공무원법」은 물론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일반 공무원보다 강력한 신분상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나. 쟁송 제기권

교육공무원인 교원은 징계 처분, 직위 해제, 강임, 휴직, 면직 처분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 소청, 즉 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 그 외 행정상의 쟁송 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불체포 특권

「교육공무원법」 제48조와 「사립학교법」 제60조 및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원 내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라. 교직 단체 활동권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은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

양에 교원 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도 및 전국 수준의 교원 노조를 결성할 수 있게 되어 단결권을 제한적으로 인정받고 단체 교섭권을 행사하고 있다.

3.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교사는 전문직 종사자이기에 앞서 인간이다. 따라서 교사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받으며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

나. 신체의 자유

다. 양심의 자유

라. 의사표현의 자유

마. 재판 청구권

II 교권침해의 개념

일반적으로 교권침해라고 부르는 사례는 **교사의 신분 문제**,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교사에 대한 협박과 금품 요구, 학부모의 부당 행위 등이다. 이처럼 일상적으로 교권침해 사례로 거론되는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 교권침해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에 대한 교육행정기관, 학교 행정가, 동료 교원, 학부모, 학생 등의 침해로 정의할 수 있다.

III 교권침해 유형

1. 교원으로서의 교육할 권리 침해 유형

- 인터넷에서의 교사 비방 또는 언론매체를 통한 압박
- 교사 배제를 주장하는 서명운동 등 명예훼손
- 학내에서 폭언이나 난동 등 수업과 업무 방해
- 학내외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폭력
-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한 폭언과 협박
-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거부, 직접 보상, 추가보상 요구
-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부당한 압박
-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
- 교사에게 일방적인 책임 전가
- 학생평가와 관련한 권한 침해

2.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침해 유형

- 사립학교에서의 법인 내 학교 간 강제전보
- 교내인사위원회의 운영 미흡
- 방학 중 근무지의 연수에 대한 승인권의 남용
- 기간제 교사에 대한 교권침해

3.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침해 유형

- 학생에 의한 교사 성희롱 또는 폭행
- 휴가 허가권의 남용 등 복무와 관련한 분쟁
- 모성보호와 여성의 권리와 관련된 권리 침해

IV 현행 교권 관련 법률

1. 헌법

(제31조제4항)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한다.”

2. 교육기본법

(제14조제1항)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제12조제3항)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 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

(제2조제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

(제4조) 교원의 불체포 특권

(제5조)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하여 교원이 그 직무를 안정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운영한다.

(제6조) 교원의 신분 보장

(제7조 이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관련 사항

4. 교육공무원법

(제7장-고충심사위원회) 신분보장, 징계, 소청의 제목으로 휴직, 불체포특권, 고충 처리

5. 국가공무원법

(제8장-신분 보장) 국가 공무원인 교원에 대하여 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직권 면직, 휴직 등을 규정

(제9장-권익의 보장) 고충 처리를 위하여 고충심사위원회 관련 규정

6.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2조) 교육 정책 수립 시 교원 의견 반영

(제5조) 행사 참여 요구의 제한

(제6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제7조)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관련 규정

V 교권보호 기구 및 제도

1. 교권보호위원회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및 시·도 교권보호위원회에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고, 공립·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2. 교원소청심사 제도

교원소청심사 제도는 1991년 제정된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된 제도로 교원이 징계 처분 및 그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원에 대한 책임용 거부 처분 포함)을 받은 경우, 이 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하고, 이 위원회의 결정은 징계권자를 기속하도록 한 제도이다. 소청 심사에 불복하는 경우는 다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이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을 학교 안전사고로 정의하고(제2조제6호), 교육감이 학교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제11조 제1항).

4. 고충심사위원회

교사는 학교행정가나 동료 교원에 의하여 교권을 침해당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대부분 학교 내의 문제가 소재가 되며, 교사가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을 사전에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 처리 제도를 두고 있다.

교육공무원은 누구나 인사, 조직, 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기타 신상 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교육공무원법」 제49조제1항).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동조 제3항).

5. 교원에 대한 민원 조사 시 교권존중

학부모나 학교 외부 인사가 교사의 교육 활동이나 그 밖의 일에 대하여 민원이나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부당한 민원이나 진정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제7조)에서는 교사에 대한 민원 조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둘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학생 등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당해 교원의 수업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셋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 대한 폭행·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6. 학생 지도와 징계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지시에 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교사는 학생에게 지도권과 징계권을 형성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서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서는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퇴학 처분을 징계의 종류를 설정하고 있다. 퇴학 처분은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 외의 자로서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제31조 제4항)

7. 학교장통고제도

가. 법적 근거 : 「소년법」 제4조제3항

소년법[법률 제8722호, 2007.12.21, 일부개정, 시행 2008. 6.22]

제4조 (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癖(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癖이 있는 것

② 생략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나. 제도 설명 : 학교장 등이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소년부)에 접수시키는 절차

다. 운영 목적 : 비행에 대한 처벌보다는 재발 방지와 환경조성을 우선하는 등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둔다.

라. 대상자

- 범죄소년(죄를 범한 소년) : 14세 이상~19세 미만
- 촉법소년(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 10세 이상~14세 미만
- 우범소년(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 : 10세 이상~19세 미만

마. 처리절차 : 사건접수(학교장→법원 소년부) → 조사 → 심리 개시 또는 불개시 결정 → 심리 → 보호 처분 또는 불처분(심리 개시 또는 불개시 결정 포함)

바. 제도 장점 : 법원의 처리 내용이나 결정이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자료로 통보되지 않음으로써 청소년(학생)의 장래에 있어서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등 교육적 측면이 강조된 제도

사. 참고 사항

- 본 제도 운영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각 지역 관할 지방법원 소년부로 문의

- 예) 수원지방법원 소년법정 법정동 201호, ☎ 031-210-1114, 210-1482~4, 210-1111

(야)

제2부 2013 교권보호 기본 계획(중점 내용)

I 실태분석

1. 교권침해 현황 실태 분석

가. 교권침해 현황(경기도교육청 2009~2012)

학년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합계(건)
	폭행	폭언·욕설	교사 성희롱	수업진행 방해	기타		
2009	7	104	0	4	12	4	131
2010	5	104	0	4	10	7	130
2011	17	575	2	32	37	2	665
2012	40	1,369	16	176	87	3	1,691
계(비율)	69 2.6%	2,152 82.3%	18 0.6%	216 8.3%	146 5.6%	16 0.6%	2,617 100%

* 단위학교 학생징계대장을 기준으로 교권침해 건수 기재

○ '12. 1학기 피해교원에 대한 조치 : 38건(전보 33건, 일반병가 5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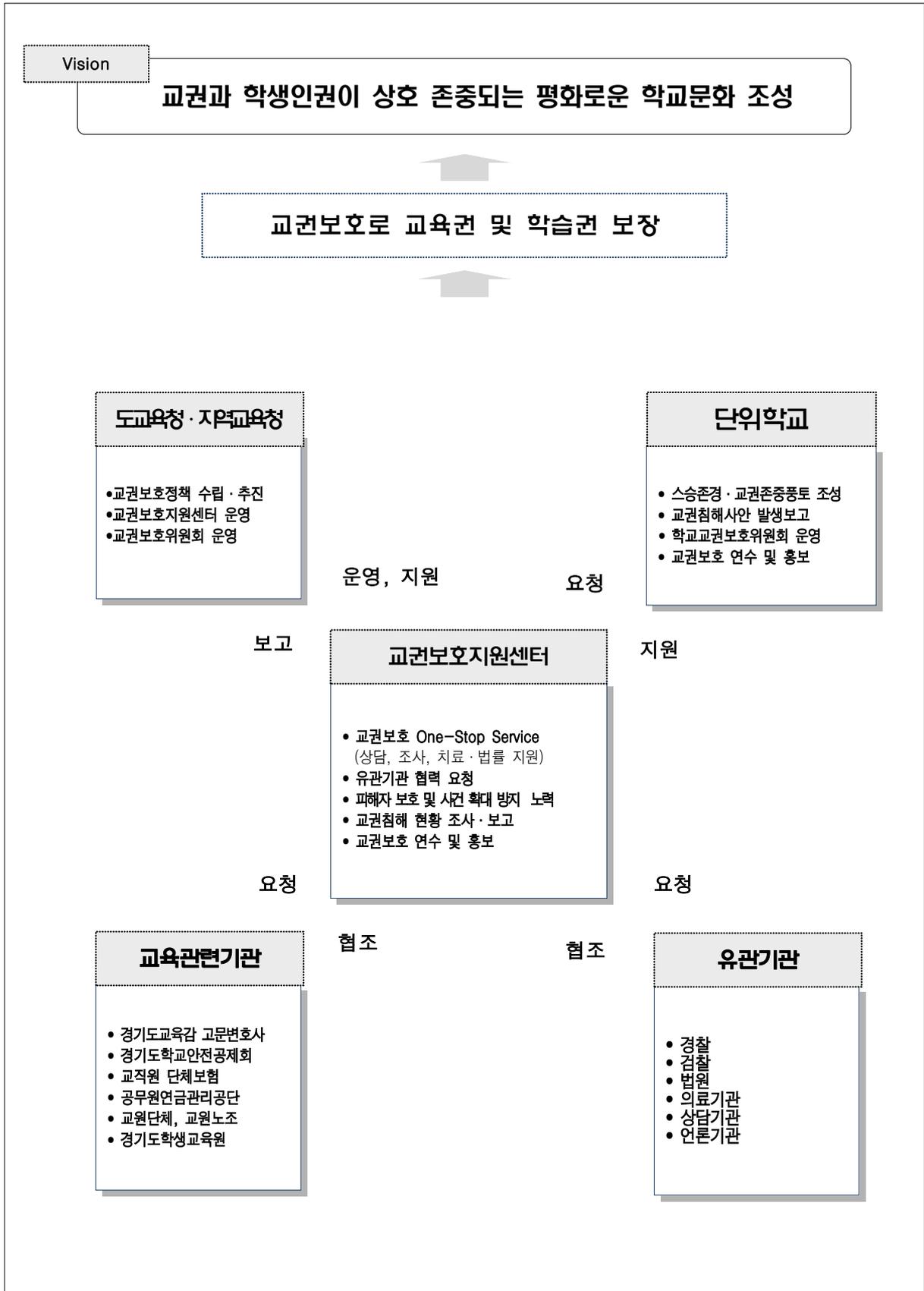
나. 2012년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현황(경기도)

구분	학생에 대한 조치							학부모 등에 대한 조치		
	학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정지	퇴학 처분	기타 (전학등)	소계	형사 처벌	기타	소계
건수	316	359	370	513	63	67	1688	1	2	1691
비율	18.7	21.2	21.9	30.3	3.8	3.9	99.8	0.06	0.1	100

2. 교권침해 현황 결과 분석

- 교권침해 행위 중 폭언·욕설 건이 많아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과 침해사안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한 대처가 필요함
- 학생에 대한 올바른 인권교육 및 예절교육 강화되어야 함
- 교권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및 교권보호지원센터 상담으로 교권침해 교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II 추진체계



III 추진내용

1. 교권침해 현황 설문 조사

가. 목적 : 교권침해사안 발생시 신속대처로 안정된 교육환경을 조성

나. 기간 : 2011년 12월 ~ 2012년 1월

다. 대상인원 : 남녀교사 약 4,500여명

라. 설문 조사 내용 및 결과

□ 교권침해에 관한 설문 주요 응답 결과

현재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교권 침해 수준	매우심각	조금심각	보통	심각하지 않음	전혀 심각하지 않음
	33%	39%	19%	7%	2%

최근 3년간 직접 경험한 교권침해 횟수	없음	1~2회	4~6회	7~9회	10회이상
	31%	32%	14%	5%	18%

교권침해 시 가해자에 대한 사후조치	그냥 참고 넘어감	화해 합의	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상담요청	선도위원회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기타
	52%	25.4%	0.3%	1%	10.3%	11%

교권보호를 위해 도교육청에서 해야할 일	교권보호 전담기구	교권존중 문화 조성	교원의 전문성향상	교육공동체 상호존중	연수 및 홍보	기타
	40%	30%	9%	8%	8%	6%

교권보호 전담기구 필요성	매우필요	약간필요	보통	불필요	매우불필요
	77%	16%	5%	2%	0%

교권보호 전담기구의 역할	상담을 통한 해결책 마련	학교 차원의 예방 및 교권보호 지원	법률자문 및 소송지원	심리치료 및 보호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연수 및 홍보	기타
	35%	26%	16%	8%	11%	2%	2%

마. 결과 대책

교권보호전담기구의 필요성에 따라 2012년 9월 교권보호지원센터 개설 운영

2. 교권보호지원센터 상담 실적

가. 운영기간 : 2012. 9월 ~2013. 2월

나. 상담실적 : 교권침해 교원에 대한 즉시 상담 실적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학생폭언폭행	교원 및 행정기관 관련	기타	성관 련	안전 사고	학생지도	계
77건 27%	46건 16%	62건 22%	69건 24%	2건	1건	30건 10%	287

다. 개선사항 : 교권 침해교원에 대한 치유 및 심리 상담 프로그램 필요함

3.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가. 설치장소 : 도교육청 별관 1층, 북부청사(의정부중앙초 내)

나. 운영주관 : 경기도교육청 학교인권지원과

다. 서비스 대상 : 교원

라. 역할 및 기능

- 1) 교권침해 교원에 대한 상담
- 2) 교권보호 One-Stop Service(상담, 조사, 치료·법률 지원)
- 3) 교권보호에 대한 학교 컨설팅
- 4) 교권보호 연수 및 홍보
- 5) 기타 교권보호 관련 사항 전담

마. 지원 내용

구분	지원 내용	관련기관 및 담당
상담 치료 지원	- 사안 발생 즉시 상담 및 현장 조사 - 사안 유형에 따른 최적 상담 지원 - 치료지원 및 치료기관 연계 서비스 - 심리치료 등 치료비 지원 안내	-상담전문가 -교육전문가 -학교안전공제회 -상담, 치료기관
법률 지원	- 교권 침해 사안별 법률 상담 - 현행 교권 관련 법률 안내 서비스 - 변호사 선임 및 소송대행, 소송비 지원 안내	-고문 변호사 -복지법무담당관실 -소송심의위원회
교권침해 예방지원	- 교권보호 연수 및 홍보 - 교권침해 현황 조사 및 재발 방지 노력	-교권보호지원단 -상담 전문가, 교권 전 문가

바. 운영시간: 평일 09:00~ 18:00

사. 사안접수 및 상담

- 1) 방법: 홈페이지, 전화, 팩스, 이메일, 방문 상담 등
- 2) 전화: 도교육청 249-0020~1(Fax 249-0024)북부청사 820-0635~6(Fax 821-1041)

4. 교권보호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

가.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지원센터(<http://goe.go.kr/eapc>)



나. 교권보호지원센터 안내

- 설치장소 : 도교육청(민원실 2층), 북부청사(별관2층)
- 운영주관 , 지원대상, 지원내용, 운영시간, 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등

다. 교권 정보 내용

교권이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자로서의 교사의 권리(교육권) ● 전문직 종사자로서 교사의 권리 ●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현행 교권 관련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 (제31조제4항) ● 교육기본법(제14조제1항, 제12조제3항) ●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 교육공무원법(제7장-고충심사위원회) ● 국가공무원법(제8장-신분 보장), (제9장-권익의 보장) ●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교권보호지원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 학교안전공제회 ● 교사에 대한 민원 조사 시 교권존중 ●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 지원제도 ● 교원소청심사 제도 ● 고충심사위원회 ● 학생 지도와 징계
경기교권보호헌장	2010년 4월 21일 제정 공포
경기도 교권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2. 11. 7 재의요구를 경기도의회 제출

다. 교권 상담 내용

- 교권침해 Q/A, 교권보호 FAQ(자주 묻는 질의 응답), 교권침해 상담

라. 교권관련 법률자문서비스 및 관련 법규 등

마. 교권보호위원회 기능 및 심의사항 등

5.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이해

1) 개념 :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성된 기구로서, 학교장의 교육활동 보호를 지원하여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을 가짐

2) 법적지위 : 기존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대체한 심의·자문기구

※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자문기구로서 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학교장이 따르지 않을 수 있음

나. 구성 및 위원 선출

1) 위원수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

2) 위원 선출 : 학교의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중에서 위원을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다만, 교원위원·학부모위원·지역위원들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선출될 수 있도록 유의할 것

다. 기능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가) 배경 : 단위학교 현장에서의 교권침해 사안의 종류 및 양태는 학교급별·학교종류별·지역별로 다르므로, 일차적으로 단위학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필요

나) 방법 및 절차 : ‘교권침해 판단 기준 및 예방 대책’ 등을 논의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

- 학부모총회 등을 연계하여 (가칭)교육활동 보호 토론회 등 개최 가능

- 상담전문가·의사·경찰·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함께 참석하도록 권장하며, 필요 시 교육청에 전문가를 추천 요청

-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칙으로 제정 가능

※ (가칭) “00학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규칙”

-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종류·심각성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 마련
- 경미한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적 조치 기준·절차 규정
-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청 보고 및 학교 차원의 대응책 등 포함

다) 유의사항 : 도교육청에서 수립하는 교육활동 보호 시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 차원의 수립한 대책에 대하여 학생·학부모가 협조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의견수렴 실시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하여 사전에 수립된 ‘교권침해 판단 기준 및 예방대책’을 기준으로 선도 등의 다양한 조치 실시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직원, 학생, 또는 학부모가 당사자인 분쟁에 대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조정
- 쌍방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으나 어느 한쪽이라도 계속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도교권보호위원회로 안건 이송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라. 회의 운영

1) 회의 소집

위원장은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

2) 회의 진행 과정 :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진행 절차를 준용

6. 교권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연수 및 홍보 강화

가. 학생·학부모 대상 교권존중 교육 강화

- 학생·학부모 대상 교권보호 교육자료 개발·보급
- 교육자료 활용 학생·학부모 교권보호 교육 실시(지역교육청, 학교)
- 학생·학부모의 임원 및 요구사항의 합법적 처리절차 안내 강화

나. 교원대상 교권보호 연수 강화

- 지역교육청별, 학교별 교권보호 연수 실시
- 교권보호 길라잡이, 교권보호 동영상 등 연수 자료 활용

7. 학교차원의 교권침해 예방 및 대책 강화

가. 학부모 상담·민원 절차 안내

- 1) 학교교육과 관련한 상담 및 민원 처리절차 가정통신문 활용 안내·홍보
- 2) 학부모가 자녀교육 상담 등 민원 처리를 위해 학교 방문시 사전 약속 계도

나. 학생지도방법, 징계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학칙 및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반영

- 1) 교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학칙 및 학교생활인권규정에 의한 엄정한 조치
- 2) 학칙 및 학교생활인권규정으로 정한 학생지도 및 징계 방법·절차·양정 등을 학부모 및

학생 등에게 적극 안내

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역할 강화

- 1) 학부모, 교직원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 사안의 경우 자율적, 교육적으로 해결
- 2) 분쟁 사안에 대한 심의를 당사자 간 조정, 학교장이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

라.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학교차원의 교육 및 홍보 강화

- 교권보호가 곧 학생의 학습권 보장임을 강조
- 다양한 형태의 학생·학부모 대상 교육 및 홍보 강화

마. 학교-교육청 간 협력체제 강화

- 1) 교권침해 사안에 대하여는 교육청과 학교가 협력하여 엄정 대처
 - 학부모의 불법 교권침해(폭언, 폭력 등)행위 발생 시 교육청 보고 및 학교장이 즉각 경찰에 고발(협박, 명예훼손, 폭행, 공무집행 방해 등의 사유 적용)
 - 사제 간의 도를 넘어서는 학생의 교사 폭언, 폭행 사안 발생 시 학칙 및 학교생활인권 규정에 의거 엄정히 처리하여 재발을 방지
 - 교권침해 관련 언론 보도 오보 시 적극 반박 및 언론 중재 요청
 - 언론기관의 학교 내 출입·취재 시 반드시 학교장의 사전 승인받은 경우만 허용 (미승인 출입·취재 시 무단 침입, 공무집행 방해를 사유로 경찰에 고발)
 - 지역교육청은 학교에서 고문변호사 상담요청 시 즉시 상담 지원 조치

8. 교권침해 학생·학부모 특별교육 운영

가. 교권침해 예방 학생·학부모 특별교육 지원

- 1) 지원기관 : 25개 지역교육청
- 2) 교육대상 : 학교장, 학부모회장, 업무담당자, 교권보호위원 (각각 1회)
- 3) 교육내용
 -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전문적 선도적 교육

- 교권 침해 상담지원을 위한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안내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내
- 교권보호관련 법률 안내

나. 교권침해 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기관 운영

- 1) 시기 : 2013. 5월 ~ 2014. 2월
- 2) 대상 : 교권침해로 선도조치 된 학생 및 학부모
- 3) 기관 : 지역교육지원청 Wee 센터, 학생 야영장(수덕원)
- 4) 운영방법
 - 인원구성 : 회기별 10명 내외로 인원 편성
 - 교육시간 : 3시간 ~ 1일 다양하게 운영
 - 교육내용 : 교권과 교권보호, 심성수련, 게임 및 집단상담, 노작활동, 체험활동, 봉사활동 등

※ 교권침해 사례별 대처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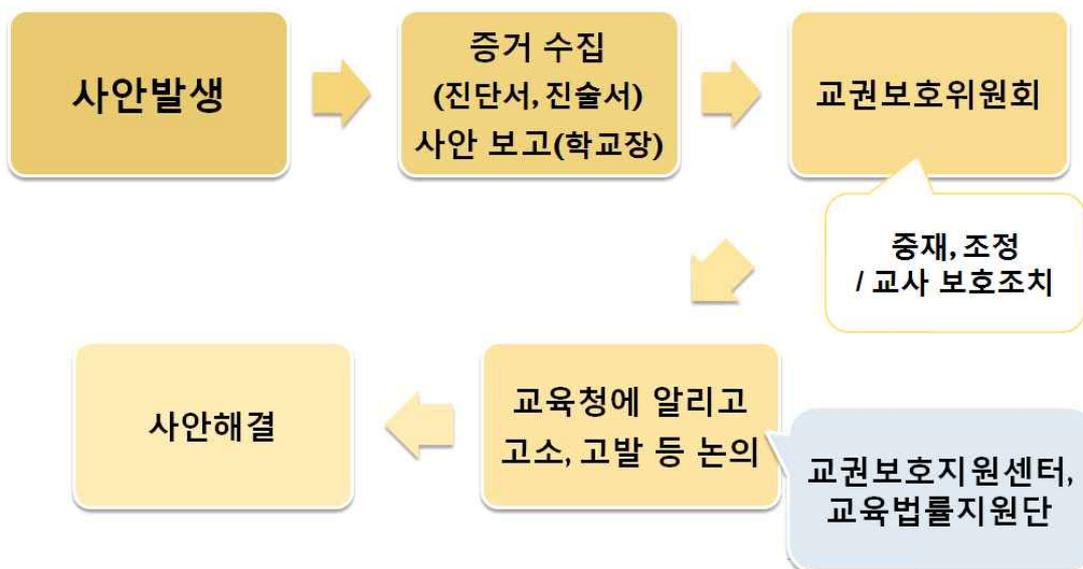
▣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 례]

아버지의 가정 폭력으로 인하여 학생과 어머니가 비밀 전학을 감.
그러자 아버지가 학교로 찾아와, 학생이 어느 학교로 전학을 간 것인지 알려주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며 교사를 협박함. (“사시미 칼로 찢러 버리겠다.”)

특수반 아동이 자신이 끼고 있던 안경을 스스로 망가뜨림.
그러자 학부모가 교사에게 안경 값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며 교사의 목살을 잡음.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에 따른 대응 절차]



▶ 증거수집: 병원 진단서 발급, 목격자 진술서 확보

▶ 교권보호위원회

- ▶ 중재, 조정
 - 분쟁 당사자들을 참석 시켜 대화와 중재를 시도함.
 - 사전에 충분한 시일을 두어 통지하여 당사자 모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함.
- ▶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
 - 필요한 경우 해당 학부모의 학교 출입을 제한하는 등 격리조치를 취함
 - 건강가족지원센터(www.familynet.or.kr), 정신보건센터(www.mentalhealth.or.kr) 등 인근 상담치료기관 안내

▶ 고소, 고발

- ▶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를 할 수 있음.(형사소송법 제233조)
- ▶ 한편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음(같은 법 제234조제1항)
- ▶ 학부모의 협박, 폭행, 모욕, 명예훼손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교사 본인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고소를 할 수 있고, 학교장은 동일한 건에 대하여 고발을 할 수 있음.



[학부모에게 성립 가능한 형사책임]

▶ 공무집행방해죄

「형 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용물손괴죄**

「형 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상 요양비 등 지급청구]

▶ **공무상요양비**

「공무원연금법」

제35조(공무상요양비) ①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한다.

1. 진단
2. 약제(藥劑), 치료재(治療材) 및 보철구(補綴具) 지급
3. 처치·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
4. 병원이나 요양소에 수용되어 하는 요양
5. 간호
6. 이송

② 제1항의 공무상요양비는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요양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한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직무상요양비**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의 준용) ① 제33조에 따른 단기급여 및 장기급여에 관한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34조부터 제41조 까지, ...의 규정 중 해당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하 생략)

■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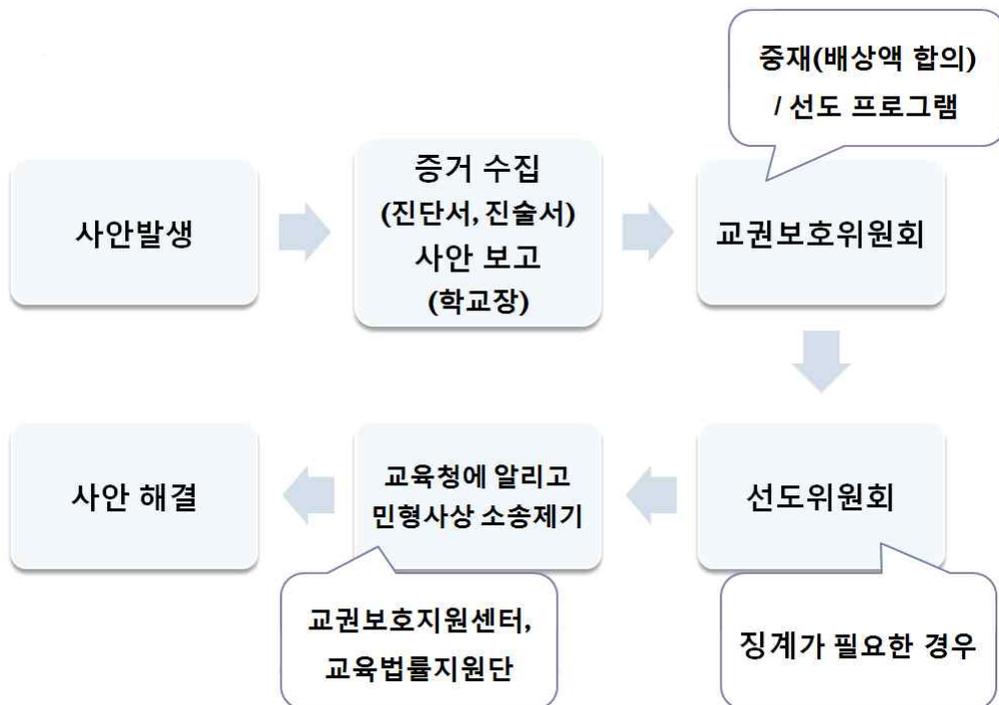
[사 례]

수업시간에 무단 외출하는 학생을 옆 반 교사가 교무실에 데려감.
그러자 학생이 "담임도 아니면서 무슨 상관이나"며 교사를 노려보다가 교사의

어깨를 거세게 밀침.

교칙을 위반(복장불량)한 학생을 교무실에 데려 옴.
그러자 학생이 교무실에 있는 화분 등 집기를 집어 던지며 난동을 부림.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대응절차]



▶ 선도 조치 vs. 징계

-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학생에 대하여 선도 조치를 내릴 수 있음.
여기서의 '선도 조치'란 선도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의미함.
- ▶ 학생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상의 징계(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퇴학)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바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도위원회에 회부해야 함.

[학교장 통고제도의 활용]

▶ 학교장 통고제의 의의

- ▶ 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범하였거나 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학교의 장 등은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음.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범죄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촉법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우범소년)
 -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 학교장 통고제의 장점

- ▶ 범죄경력조회나 수사자료표에 기재되지 않음.
- ▶ 가정의 보호력이 미흡하고, 지속적인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 효과적임.
- ▶ 법원의 비용부담 하에 전문가 진단, 심리상담 조사 등을 받을 수 있음.

▶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학교장 통고제의 활용

- ▶ 교직원에 대한 모욕, 헐박, 성추행, 명예훼손, 폭행, 업무방해(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 차원의 선도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 학교장 통고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 ▶ 특히 학생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심리상태가 불안하여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진단 및 치료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 통고제도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 통고된 사건의 처리절차

- ▶ 사건 접수
- ▶ 사전 조사
소년조사관, 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등에서 담당
- ▶ 심리개시결정
- ▶ 심 리
법원에서 정한 심리기일에 보호자와 소년이 함께 참석하여 비공개로 재판
- ▶ 보호처분결정

보호처분	기간(시간)	대상 연령
1. 보호자 감호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만 10세 이상
2.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만 12세 이상
3.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만 14세 이상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년/ 1년 연장 가능	
6.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만 10세 이상
7. 병원, 요양소 등 위탁		
8.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9.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만 12세 이상

[교권침해로 인한 전학조치 가능여부]

- ▶ 보호자와 학생이 원치 않는데 강제로 전학조치를 할 수는 없음.
- ▶ 그러나 보호자와 학생도 전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 전학 가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③, 제73조⑤, 제89조⑤

: 학생의 질병, 학교생활 부적응, 학교폭력 피해, 가정 사정 등을 이유로 교육 환경을 바꿔줄 필요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하에 전학이 가능

▣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교권침해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교권침해 유형 및 대응요령]

교권침해 유형	대응 요령
도의적 금전보상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인 보상금 지급 X, 학교안전공제회에 요청하여 법적으로 처리 • 부당한 요구 시 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 요청
담임교체, 징계 등 요구	교원소청심사청구
언론 유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정정보도청구), 제 16조(반론보도청구) • 명예훼손죄로 고소
기타	민사, 형사 소송제기 검토

[학교안전사고 관련 소송비용 지급]

- ▶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교원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함. (인지대, 변호사 선임비용, 송달료 등)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공제회의 사업)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7.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공제가입자 또는 교직원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책임에 관한 판례]

대법원 1995.12.26, 선고, 95다313, 판결

- ▶ 학교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이러한 교사의 감독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 하더라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며,

그 예측가능성에 대하여서는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 ▶ **고교 1학년의 씨름부 학생들이 씨름연습장에서 장난삼아 동료 학생을 집어 던져 척추손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가해자들의 분별능력과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씨름연습이 평소보다 빨리 끝나고 자축 회식이 예정되어 있어 학생들의 정신 상태가 해이해지기 쉬운 상황이고 그로 인하여 학생들이 장난 등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여, 씨름연습장에서 두 사람이 함께 한 사람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신체에 커다란 충격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장난을 하리라는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거나 지도교사 등이 이를 예견 가능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 사고는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로 보아야 하므로, 교사 등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

수원지법 2010.4.29, 선고, 2009가합9167, 판결 : 항소

- ▶ **중학교 계발활동(Club Activity) 시간에 학생들이 얼음조각으로 야구놀이를 하던 중 튼 얼음 파편을 눈에 맞은 학생이 실명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
- ▶ 얼음 파편을 눈에 맞은 학생 A는 통증을 호소하며 손으로 왼쪽 눈을 감쌌고, A가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본 다른 학생들이 감독교사에게 ‘A가 눈을 다쳤다.’고 말했으나, 교사는 A에게 ‘괜찮을 것이다. 계속 아프면 병원에 가보라.’고만 하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A는 4교시가 끝날 때까지 앉아서 쉬었으나, 달리 양호실이나 병원에 가지는 않았다.
- ▶ 이 사건의 경우 감독교사는 비가 온다는 이유로 10여 명의 학생들만을 좁은 컨테이너 박스 안에 들어가 있도록 하였는데, 학생들이 컨테이너 박스 안의 물품을 이용하여 그와 같은 야구놀이를 계속 하리라는 점 및 10여 명의 학생들이 밀집해 있는 좁은 공간에서 물건을 던지고 놀 경우 그 공간 내의 다른 사람이 그 물건에 맞을 수 있다는 점은 학생들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교사로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 ▶ ... 학교 내에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는 경우임에도 학생들에 대한 지도·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담당 지도교사의 과실이 인정된다.

[국가배상법에 따른 공무원의 책임]

대법원 1996.2.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 제29조 제1항 본문과 단서 및 국가배상법 제2조의 입법취지에 조화되는 올바른 해석이다.

[부록 1] 교권침해 사안보고 양식

사안명

기관명(부서명)		보고일자	
담당자	직)		성명)
연락처	사무실	이동전화	
<input type="checkbox"/> 사안 개요 ○ - <input type="checkbox"/> 향후 진행 방향 ○ - <input type="checkbox"/> 문제점 및 대책 ○ - <input type="checkbox"/> 건의 또는 협조 요청 사항 ○ -			
[참고자료]			

- * 육하원칙에 의거 개조식으로 작성
 - * A4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참고 자료 등이 많을 경우 별도 제출
 - * 동 서식은 참고안으로 사안에 따라 효율적으로 변경 작성 가능
- [부록 2] 교권침해 학생 선도 처분 요구서 양식

[부록 3] 교권보호위원회 관련 법령(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관련법령 :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2조의2(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등)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제6조의2에 따른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활동 보호를 전담하는 기관 및 조직의 구성·운영

2.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 연수 및 홍보

3.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의 치료, 전보(轉補) 등 보호 조치

4. 제6조의3에 따른 법률 상담

5. 제7조제3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등에 대한 조사 및 관리

6. 그 밖에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교직원, 학생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6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제외한 각급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며, 유치원에는 유치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이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그 학교의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고, 공립·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의2(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시책
2.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분쟁 조정
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의 조정
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각급학교의 교원, 학생, 또는 학부모가 당사자인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하여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해당 시·도 의회 의원(교육위원을 포함한다)
2. 해당 시·도 교육청의 교원정책을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3.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원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6.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교육감이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을 심의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부록 4] 교권보호위원회 규정(예시안)

○○학교 교원보호위원회 운영 규정(예시안)

○○학교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의 학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의 구성이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1. 해당 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
2.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3. 해당 학교의 교사 중 교권보호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교사
4.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또는 학부모 위원
5.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률적 지식이 있는 사람
6.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7. 의사, 상담전문가 등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8. 그 밖에 교권보호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회는 자녀학생이 졸업 및 전학·퇴학한 때. 다만, 자녀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4. 학부모위원회가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5. 제8조제3항을 위반한 때
 -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 ③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회의 소집) ① 위원장은 재적위원 1/4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제10조(회의 운영) ① 회의 소집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한다.

- ② 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비밀누설 금지)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 및 이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2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제12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② 분쟁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 등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 등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교권보호 신청) 교권침해 사안에 관련된 교원은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교권보호를 신청 할 수 있다.

제15조(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 할 수 있다.

1. 즉시 조치: 긴급을 요하는 경우 피해교사 보호 및 안전조치를 취한다.
2. 관련자료 수집: 시기, 내용, 관련학생, 상황 파악을 하여 학교장에게 즉시 사안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3. 사실관계조사: 사고경위서 및 일지 작성(6하원칙), 목격자 진술 확인, 진단서 확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학생·학부모 면담 및 교육
5. 선도위원회 개최 요청

제16조(학부모의 교권 침해에 대한 조치)학부모의 심각한 교권 침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즉시 조치: 긴급을 요하는 경우 피해교사 보호 및 안전조치를 취한다.
2. 관련자료 수집: 시기, 내용, 관련학생, 상황 파악을 하여 학교장에게 즉시 사안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3. 사실관계조사: 사고경위서 및 일지 작성(6하원칙), 목격자 진술 확인, 진단서 확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조정·중재활동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중재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피해 교원과 교권침해 학부모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되, 피해 교원의 경우에는 진술설로 대신할 수 있다.

5. 제4호에 따른 조정·중재가 원만하게 되지 않을 경우, 경기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한다.
6. 고소·고발 및 소송: 심각한 피해 발생 또는 학부모의 부당한 요구시 경기도교육청교육법률지원단의 도움을 받아 고소·고발 및 소송 절차를 밟는다.
7. 해결확인,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제17조(심의 등 결과의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등의 결과를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학교장은 그 사실을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교원에 대한 협박·폭행·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에게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분쟁 당사자 쌍방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어느 한 쪽이라도 계속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경기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로 안건을 이송한다.

제18조(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9조(규정의 제·개정) 본 규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개정되거나 제반 상황의 변동으로 인해 본 규정을 제·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개정할 수 있다.

제20조(세부적인 운영 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본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위원 임기만료)동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구성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1년 이상 2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록 5]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안내

□ 이용방법(접속방법)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 행정마당/ 법무행정서비스/ 법무도우미 / 법률자문도우미

법률자문 도우미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 전 기관을 위한 법률자문 도우미입니다. 교직원전용 공간으로 업무포털인증서로 상단의 교직원로그인 하셔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역별 자문담당 변호사를 지정하여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 아래 사항을 작성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질의요지(사건의 사실관계를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 기술), ②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甲설, 乙설, 丙설), ③ 지체 검토의견, ④ 관계 법령(지치법규 포함), ⑤ 최신 판례 4-6월 소요
 ※ 법률자문 후 인의로 질의를 삭제한 경우, 즉시 자문의뢰한 변호사에게 연락 협조, 책임회피용 자료 지양
 글쓰기를 하는 경우, 본문 또는 첨부파일 내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등)가 게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역별 자문담당 변호사	고문변호사현황		
수원, 화성오산, 평택	박공우 주은희	부천, 광명, 안성	소운수 정병혁
성남, 광주하남, 고양, 동두천양주	이기록 김효식	안산, 시흥, 김포	한진희 탁경국
인양과천, 군포의왕, 가평	김기현 박형명	의정부, 구리남양주, 연천, 파주, 포천	정성호 우경선
용인, 여주, 이천, 양평	김철준 김원일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지정변호사
949	채권양도통지서	서종원	2013.05.02	
	FE : 채권양도통지서	소운수	2013.05.02	
948	업무관련 질문입니다.	장성준	2013.05.02	
	FE : 업무관련 질문입니다.	소운수	2013.05.02	
947	업무관련법률자문	주영임	2013.04.30	
	FE : 업무관련법률자문	김기현	2013.05.01	
946	경제집행 절차에 관련된 질의	홍미혜	2013.04.29	
945	원어민속소 전세권 설정 관련 법률자문 요청	최범용	2013.04.29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 현황

성명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팩스
우경선	의정부시 기능동 365-16 진성빌딩 3층 법무법인 지원	871-0002	031-871-4175
탁경국	서울 강남구 역삼동 601-18 은성빌딩 5층 탁경국 법률사무소	02-508-7954	02-508-2116
박형명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8-23 여삼빌딩 12층 법무법인 양현	02-3453-8200	02-3458-8270
주은희	수원시 영통구 매탄2동 102-22 진 빌딩 602 법무법인 경기	212-8858	031-213-1280
김원일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4-22 법조빌딩 2층 법무법인 효원	211-1234	031-212-2928
한진희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5-23 한진희 법률사무소	214-6464	031-214-6466
정병혁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5-23 승전빌딩 305 정병혁 법률사무소	213-5800	031-213-9252
김철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4-1 전원빌딩 301 법무법인 다산	213-2100	031-212-1006
박공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02-17 명진빌딩 4층 박공우 법률사무소	217-2266	031-214-5511
소운수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5-21 안전빌딩 3층 소운수 법률사무소	217-8181	031-217-8184
김기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 한양월드빌 206호 법무법인 안양	387-5400	031-387-5409
정성호	의정부시 기능1동 363-1 법전빌딩 정성호 법률 사무소	873-3535	031-872-1498
김효식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0 모아나빌딩 4층 법무법인 통일	908-6700	031-904-6695
이기록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43-12 장생빌딩 5층 법무법인 창조	02-588-4350	02-588-4415

[부록 6]

경기교권보호헌장

2010년 4월 21일 제정 공포

제1장 총칙

1. 교육은 학습자의 총체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활동으로서, 학습자를 교육하는 교육자의 자질과 전문성에 크게 좌우됨을 인식한다.
2. 교육자는 자신의 지위가 자신에게 달려 있음을 자각하고 전문성과 윤리 의식을 드높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3. 학습자와 학부모 및 교육행정당국은 교직을 전문직으로 간주하고, 교육자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교육 당사자는 각자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교육권의 조화로운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다.
5. 교육행정당국인 교권이 보호받고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제2장 교사의 권리와 책무

제1절 일반 원칙

6. 교육자는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하에서 규정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가진다. 이하에서 규정되지 않은 권리라고 하여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7. 교육행정당국은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2절 교육자로서의 권리

8. 교육자는 가르치는 일에서 학문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 교육자는 교육내용 선택과 교육방법 결정, 평가와 학생 지도에서 전문가로서의 식견과 윤리의식에 입각하여 자유롭게 전문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9. 교육자는 연구자로서 새로운 교육과정과 교육자료를 개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10. 교육자는 학교 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학교의 공동 사무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제3절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11. 교사가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사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한다.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직업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 각계의 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12. 교사들이 각종 전문적 단체를 조직하여 자신들의 교직 전문성을 계발하는 일은 적극 권장되어야 한다.
13. 교사는 교육활동과 관련된 부당한 요구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학교행정가는 교사가 부당한 요구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교육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을 다하여야 한다.

14. 교사에 대한 징계 조치는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모든 교원은 어떤 징계 절차든 각 단계마다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
 - ① 징계 회부와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
 - ② 징계 사유에 관한 증거를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권리
 - ③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지고 스스로 변호하거나, 자기가 선택한 대리자로 하여금 변호하게 할 수 있는 권리
 - ④ 결정 사항과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
 - ⑤ 명확히 지정된 기관이나 기구에 소청할 수 있는 권리
15. 교사는 건강하게 교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교육행정당국은 교사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16. 여 교사에 대한 어떠한 차별 행위도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가정의 책임을 가진 여 교사가 육아와 교육 활동을 조화롭게 전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제4절 인간으로서의 권리

17. 교사는 인간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권리를 특별한 이유없이 제한받지 않아야 한다.
18. 교사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제5절 교사의 책무

19. 교사는 자신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신장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20. 교사는 교육활동 중에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1. 교사는 교육활동 과정에서 정치적·종교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2. 교사는 학부모의 정당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3. 교사는 학교의 공동 사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3장 교권 교육

24. 교육행정당국은 교사들이 교권을 자각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25. 교육행정당국은 학습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권의 조화로운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26. 교육행정당국은 학교행정가를 대상으로 교권을 보호하고 교육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4장 교권 보호 제도

27. 교육행정당국은 교권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교권 보호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28. 교육행정당국은 학교에서 교권 교육 및 교권 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29. 교육행정당국은 교권 상담 및 교권이 침해된 교사가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원만하게 교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가칭) 교사지원센터 등을 지정·운영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0. 교육행정당국은 교권 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가칭) 교육권보호위원회 등의 적절한 기구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1. 교육행정당국은 학부모 등의 무고한 행위로 피해를 입는 교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권 전담 변호인단 구성 및 운영 등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